3.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: 2019년 7월 5일

○ 발 의 자 : 황순자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지만 의원, 김태원 의원, 서호영 의원, 이시복 의원, 전경원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7월 8일

○ 상정일자 :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7월 23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순자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'18.7.1.시행)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, 저소득시민 지원대상 기준을 “월 1만원 미만 세대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확정하는 “최저보험료 이하 세대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○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부과금액 “월 10,000원 미만”에서 “최저보험료 이하” 세대로 개정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○ **안 제2조**의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“월 10,000원 미만” 세대에서 “최저보험료 이하” 세대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검토결과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'18.7.1.시행)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,

○ 저소득시민이 상위법령 시행 이후 자격변동(직장→지역가입자)이나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,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월 10,00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본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음.

○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인 만큼, 구·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나 자산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,

○ 아울러,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